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3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이정훈·유 용·문상모
김문수·김창수·오봉수·박준희
김정태·장인홍·김광수(노원)·김미경
김기만·전철수·이현찬·김혜련
김진철·박호근·이윤희·김인호
문형주·맹진영·박양숙·이숙자
신건택·우미경·이성희·진두생
김경자(강서)·김용석(서초)·김기대
이상묵·신언근·김광수(도봉)·이승로
의원(3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택시이용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촉진하고 있으나, 현행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이 특별한 근거없이 정액(1만원 이하)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 카드수수료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고, 2년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2. 주요골자

가. 카드 수수료 지원기준을 정률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2017년까지로 제한되어 시행중인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기간 한시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기본요금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기본요금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삭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제1항의 내용이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에서 “기본요금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기본요금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지원액(조례안 제4조 1항)

나. 전제

○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정함에 따라 2017년만 비용발생

○ 2014년 대비 2015년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액 증가율 10% 적용

○ 수수료율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교통 1.5%, 신용 1.7%)

○ 카드결제 택시수는 2015년말 기준 72,096대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기간 : 2017년

라. 방법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의 사업설명서, 2014~2016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결산자료 및 한국스마트카드사의 2013~2015년 택시요금 9천원이하 카드결제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9,144,75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7)	합계
세입	-	-	-
	소계(a)	-	-
세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9,144,752	9,144,752
	소계(b)	9,144,752	9,144,752
□ 총 비용(a-b)		9,144,752	9,144,752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 책 조 사 팀 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기본요금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지원액(조례안 제4조 1항)

○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추계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9,144,752천원

○ 총비용 = 〔2015년 9,000원이하 연간 택시 카드수수료 - 2015년 기준 카드 수수료 지원액(5,500원이하 대상)〕 × 연간 상승률

= (15,500,455,000 - 7,942,808,000)× (110%)^2 = 9,144,752천원

2017년 카드수수료	9,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액(A)	5,500원이하 수수료 지원액(B)	총 비용(A-B)
금액	18,755,550	9,610,798	9,144,752

※ 연간 상승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카드 수수료 지원액 증가율 10%적용

※ 2015년 기준금액이므로 10%를 2번 가중하여 2017년 카드수수료 지원액을 산정

※ 2015년 카드 수수료 지원액(7,942,808천원)과 【참고1】의 카드수수료 예산(7,900,000천원)간 차이(42,808천원)가 나는 이유는 예산·결산간 발생된 차액 때문임

※ 2014~2015년 서울택시 9,000원 이하 카드결제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
개인	413,343,472,200	6,970,398,041	462,115,240,150	7,797,658,298
법인	421,562,622,030	7,109,414,141	456,485,219,890	7,702,797,649
합계	834,906,094,230	14,079,812,182	918,600,460,040	15,500,455,947

【참고1】 서울시 기 추진 사업 현황(2016년 예산)

☐ **5,5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단위 :천원)

조례 명시 사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카드수수료 지원(제4조)	7,900,000	9,100,000
합 계	7,900,000	9,100,000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참고2】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택시물류과)

☐ **카드장착 의무화 시행 : 2012.7.1.부터 (2012.4.26. 사업개선명령)**

☐ **카드장착대수**

❍ '07년 23,000대 → '11년 70,578대 → '15년 72,096대(전체택시 72,165대의 99.9%)

-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차량 : '15년말 72,096대

※ 미장착 차량은 운휴 차량 및 대폐차 차량임

- 카드결제기 장착택시는 '07년이후 매년 22% ~ 29%씩 증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착 현황	23,000 (31%)	39,000 (53%)	60,034 (82%)	69,487 (96.0%)	70,578 (97.6%)	72,196 (99.9%)	72,105 (99.8%)	72,105 (99.9%)	72,096 (99.9%)

☐ 카드결제 수수료율 변화 : 신용 1.9 → 1.7%(연간 30억 절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통	2.4%	2.4%	2.4%	2.%	1.9%	1.5%	1.5%	1.5%	1.5%
신용	2.4%	2.4%	2.4%	2.4%	2.1%(7월)	1.9%(7월)	1.7%(12월)	1.7%	1.7%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금액(연도별)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103,803	2,250	8,069	8,310	9,120	8,553	18,500	17,195	17,106	14,700
장착비	9,300	2,250	3,750	1,800	750	750	-	-	-	
관리비	43,467		3,539	5,510	7,050	6,707	7,865	5,330	4,916	2,550
통신비	21,401		780	1,000	1,320	1,096	4,488	4,177	4,290	4,250
수수료	29,635	-	-	-	-	-	6,147	7,688	7,900	7,900

【참고3】 지자체별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택시물류과)

☐ '16년도 지자체별 카드택시 지원 현황 (인구 150만이상 광역시 기준)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택시대수	72,096	14,394	25,049	16,961	8,793
지원항목 (대/월)	관리비-3,000원 통신비-5,000원 수수료-6,000원 이하 결제금액	수수료-50% 통신비-5,000원	11,000원	수수료-10,000원 통신비-5,000원	수수료-전액 통신비-5,500원
'16년 예산	15,546백만원	2,602백만원	2,970백만원	2,500백만원	2,327백만원
카드수수료율	1.7%	1.9%	1.9%	2%	2.1%
카드결제율	62.2%	68%(법인) 개인: 파악 곤란	26%	20%	50%
택시 1대 기준 연간 지원예정액	215,600원	180,700원	118,500원	147,300원	264,600원
비고	-	법인 : 5,385 개인 : 9,009	결제건수기준 개인-40건 법인-45건	-	-
카드운영 및 정산사업자	KSCC	KSCC 마이비(EB)	KSCC 마이비(EB)	KSCC 유페이먼트	KSCC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